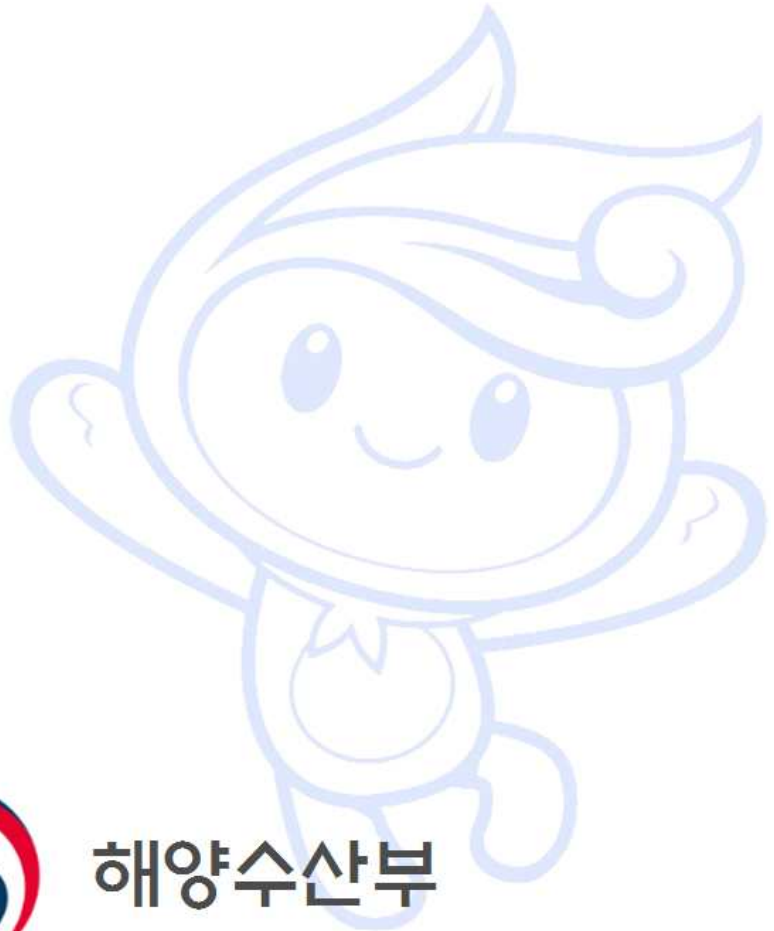


---

# 2020년 해양수산 이렇게 달라집니다.

---



해양수산부

# 목 차

## < 일반국민 >

1. 국립해양과학관 개관 ..... 1
2. 모바일 여객선 승선권 제도 확대 시행 ..... 2
3. 연안여객선 유아용 구명조끼 의무 비치 ..... 3
4.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 4
5. 연안여객선 교통약자 취약시설 설치·지원 ..... 5
6. 해양용도구역 지정 및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 시행 ..... 6

## < 어업인 >

7. 어업양식 소득세 감면 확대 ..... 7
8. 수산직불금 인상 ..... 8
9. 어선 안전 관리 강화 ..... 9
10. 어선 사용가능 소화기 범위 확대 ..... 10
11. 생분해성어구 보조금 확대 ..... 11
12. 선박 음주운항 처벌 강화 ..... 12
13. 양식분야 민간투자 및 기술개발 활성화 ..... 13

## 〈 연안지역 및 도서민 〉

14.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확대 .....	14
15. 도서민 여객선 승선절차 간소화 .....	15
16. 항만 미세먼지의 본격 저감 .....	16

## 〈 해양수산업계 및 종사자 〉

17.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 도입 .....	18
18. 선령 50년 이상 소형유조선 이중선저 의무화 .....	19
19. 마리나업 등록·변경 수수료 폐지 .....	20
20. 마리나 대여업 등록 진입장벽 완화 .....	21
21. 마리나 대여업 입출항기록 관리 의무화 .....	22
22. 관공선 친환경 선박 건조 의무화 .....	23
23. 비관리청 항만공사 행정절차 명확화 및 간소화 .....	24
24. e-네비게이션 시범운영 개시 .....	25

[참고] 신·구 대비표 .....	26
--------------------	----



## 국립해양과학관이 개관합니다.

해양정책과 (☎ 044-200-5233)

- 국내 최초 해양과학 주제의 문화시설인 **국립해양과학관**이 경북 울진, 죽변면 후정리에서 2020년 5월에 개관합니다.
- 국립해양과학관은 2015년 사업이 착수되어 총사업비 971억원의 투자를 통해 2019년 12월에 준공되었습니다.
- 국립해양과학관은 “One Ocean, One Planet”이라는 주제로 해양과학 분야의 과학적 원리 및 성과를 실물모형, VR(가상현실) 등을 통해 설명하는 전시사업과 다양한 연령 및 수요 대상을 고려한 해양과학 교육프로그램을 공급하여 국민들의 해양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 이와 같이 해양과학분야의 교육·전시·체험 기능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첨단 과학관인 국립해양과학관 대한민국 21세기 해양과학 교육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 해양과학관법('20.6 시행)

### < 국립해양과학관 시설개요 >

- 목적 : 해양분야의 교육·전시·체험 기능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해양과학교육관을 건립하여 21C 해양과학 교육거점으로 활용
- 주요내용
  - (위치) 경북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
  - (사업기간) '15.1 ~ '19.12
  - (총사업비) 971억원 (국비 852, 지방비 119)
  - (건립규모) 부지 111,000m<sup>2</sup>, 건축연면적 12,345m<sup>2</sup>
  - \* 전시교육관 1동 (3층), 부속동 1동 (50명 수용), 해중전망대 등
- 개관일 : 2020년 5월 29일(바다의 날 행사 공동개최)



## 모바일 여객선 승선권 제도가 확대 시행됩니다.

연안해운과 (☎ 044-200-5733)

□ 인터넷 또는 모바일 App을 통해 여객선 예약 및 발권이 가능한 **모바일 승선권 제도가 전체 여객선으로 확대됩니다.**

○ 여객선을 이용하는 승객은 출발지 터미널 발권창구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실물 승차권을 발권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 시범사업 등을 통한 제도 개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2020년 2월부터는 **모바일 승선권 제도를 전체 선사로 확대합니다.**

- 여객선 이용객이 '**가보고 싶은 섬**'(인터넷 또는 모바일App)에서 여객정보를 제공하고 승선권을 **예매**하면, 알림톡\*을 통해 **승선권 정보가 탑승자의 스마트폰으로 전송**됩니다.

\* 알림톡으로 발행되는 모바일승선권을 모바일 App에서 승선권이 표출되도록 개선 예정('20년 상반기)

- 여객선 **승선 시** 스캐너로 **승선권 정보와 신분증을 확인 후 탑승**하므로 창구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발권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져 **섬여행이 더욱 편리**해지게 될 것입니다.

### < 모바일 승선권 확대 실시 >

□ **추진배경** : 모바일 승선권 제도를 확대하여 여객선 이용 편의 확대

□ **주요내용** : 여객선 승선절차 간소화 및 시범 사업 확대 실시

① (방침 확정) 여객선 승선자 신분증 인정범위 확대 방침 확정 및 인천지역 선사들과 시범사업 실시

② (시범사업 확대 및 시스템 개선) 전 선사로 확대하고 알림톡으로 발행되는 모바일승선권을 모바일 App에서 승선권이 표출되도록 개선 예정

□ **시행일** : 2019년 2월 1일



## 연안여객선에 유아용 구명조끼가 필수적으로 비치됩니다.

해사산업기술과 (☎ 044-200-5838)

□ 현재는 성인용 및 어린이용 구명조끼의 비치만 의무화 되어 있으나 체격이 작은 유아의 안전을 위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연안여객선에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가 의무화됩니다.

- 현행 : 연안여객선에 성인 및 어린이용 구명조끼 비치
- 개정 : 연안여객선에 유아용 구명조끼 추가\* 비치

\* 여객정원의 2.5퍼센트 이상에 해당되는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

※ (참고) 구명조끼 종류별 착용범위

기 준	유아용	어린이용	성인용
몸무게	15kg 미만	15 ~ 43kg	43kg 이상
키	100cm 미만	100 ~ 155cm	155cm 이상

○ 개정 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알림·뉴스>뉴스>보도자료>연안여객선에 유아용구명조끼도 꼭 비치해야 합니다(2019.6.4.)

### < 연안여객선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 의무화 >

- **추진배경** :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지속 증가 중으로, 비상시 유아의 안전확보를 위해 유아용 구명조끼 의무비치규정 신설
- **주요내용** : 연안여객선(유·도선 포함)에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기준 신설 (여객정원의 2.5퍼센트 이상)
- **시행일** : 2020. 1. 1.



## 낚시어선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됩니다.

수산자원정책과 (☎ 044-200-5538)

- 먼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개정('20.1.1 시행)에 따라 **1월 1일부터** 낚시어선 사고 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안전장비가 강화**됩니다.
  - 선박 전복 등 대비 **13인 이상** 낚시어선에 **구명뗏목 설치**(3월말까지 계도기간)해야 하며, **신조선의 경우 선실내 2개 이상 비상탈출구를 확보**해야 합니다.
  
- 또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및 하위법령 개정('20.2.21 시행)으로 **2월 21일부터** 낚시어선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잠정)**됩니다.
  - 낚시어선업 신고 시 낚시어선 **선장의 자격\***과 **전문교육 이수** 등 요건이 추가됩니다.
    - (현행) 소형선박조종면허
    - (개정) 소형선박조종면허+승선경력 2년('21.2.20까지는 승선경력 1년)
  - **신규 진입자와 사고 발생자는 전문교육**(5일 이내)을 받아야 하며 낚시승객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승선\***이 의무화됩니다.
    - \* 야간영업을 목적으로 출항시 13인 이상이 승선하고 있는 낚시어선
  - 아울러 **매년 안전성 검사**(선체, 기관 및 설비 등)를 받아야 하며,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영업 중 낚시 행위가 금지**됩니다.
  - 낚시 활동 금지행위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가 금지되며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금지**가 추가됩니다.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낚시 및 육성법



## 연안여객선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지원

연안해운과 (☎ 044-200-5732)

-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연안여객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안여객선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합니다.
- 2020년에는 보조항로 운항 국고여객선(26척)에 휠체어 승강설비, 장애인전용 화장실, 교통약자 전용좌석 등을 우선 설치하고,
  - 2021년부터 일반항로를 운항하는 연안여객선(민간사업자)을 대상으로 설치비용의 5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교통약자법」에 일률적으로 규정된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연안여객선의 특성과 여건에 맞게 현실화하고,
  - 선사가 선박에 맞는 안전한 교통약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선종별 교통약자시설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연안여객선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 주요내용 : 연안여객선에 교통약자용 좌석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및 실태 점검
  - \* 안내방송, 문자안내판, 목적지표시, 휠체어승강설비, 휠체어보관함, 교통약자용좌석, 장애인전용화장실, 장애인접근가능표시, 출입구통로 등
- 추진일정
  - 2020년(1단계) : 보조항로 운항 국고여객선 26척 대상
  - 2021년 이후(2단계) : 일반항로 운항 연안여객선으로 확대 지원





## 바다에 해양용도구역이 지정되고,

##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 제도가 시행됩니다.

해양공간정책과 (☎ 044-200-5261)

- 해양수산부가 2019년 7월 수립·발표한 제1차 해양공간 기본계획('19~'28)에 따라 시·도에서는 전 해역에 걸쳐 해양공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이를 통해 각 해역별 특성에 맞는 해양공간관리 정책방향에 따라 **해양용도구역을 설정**하게 됩니다.
    - 또한, **해양공간적합성협의를** 통해 **해양에서의 이용·개발 계획이 해양공간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계획 수립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게 될 예정입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부터 지자체별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해양공간 통합관리를 위한 세부 규정·지침 제정 보도자료

### <해양용도구역 지정을 위한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 **관리방향** : 전 해양공간의 통합관리 및 해양공간의 계획적 이용
- **주요내용** : 해양공간에 대한 공간특성평가, 이용·보전수요 등을 고려하여 용도구역(9종) 지정
  - \* 어업, 골재·광물, 에너지개발, 해양관광, 환경·생태계관리, 연구·교육, 군사, 항만·항행, 안전관리
- **추진일정**
  - 2020년 수립 예정 : (영해) 경기만, 부산, 경남, 전남, 제주, 울산, 전북, 충남 (EEZ) 서남해안, 서해안
  - 2021년 수립 예정 : (영해) 강원, 경북 (EEZ) 동해안



## 어업인 소득세 감면 범위가 확대됩니다.

수산정책과 (☎ 044-200-5431)

- 현재 어로·양식을 합하여 소득 3천만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되나, 2020년 상반기(잠정,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부터는 **어로소득과 양식소득을 별도로 구분하여 어로소득 5천만원, 양식소득 3천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 어로소득을 분리함에 따라 **어로, 양식을 겸업**하는 어가는 **최대 소득 8천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 (현행) 3천만원(어로·양식 합산) 비과세
    - (개선) 최대 8천만원(어로 5천+양식 3천) 비과세
-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어업인 소득세 감면확대 보도자료](#)

### <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어업인 사례 >

어업인 A씨는 제주에서 어선어업과 소규모의 넙치 양식장을 운영중이다. 매년 어선어업으로 약 5천만원, 넙치 양식으로 약 1억원의 수익을 내고 있지만, 1억 5천만원 중 3천만원까지만 비과세 적용을 받다보니, 어업소득에 따른 과세 부담이 컸다.

내년에 세법이 개정되면, 어선어업 소득은 전액, 여기에 넙치양식수입은 별도로 3천만원까지 비과세되어, 7천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고 한다. 세금으로 인한 부담이 크게 줄어 어업경영 및 어촌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 어업인 소득세 개요 >

- **근거법** :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 **시행일** : 2020년 상반기(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



## 수산직불금이 인상되고, 수급 대상지역도 확대됩니다.

소득복지과 (☎ 044-200-5463)

-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어가에 지원하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이 2020년부터 **7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은 '12년부터 지급하고 있으며, '17년부터 '20년까지 **매년 5만원씩 인상**되었습니다.
    - \* ('12~'16년) 어가당 50만원/년 → ('17) 55 → ('18) 60 → ('19) 65 → ('20) 70
- '20년부터는 **접경지역이 조건불리지역에 포함**되어 해양영토 수호에 기여하는 어업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 \*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김포시, 강원 고성군

###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개요 >

- **지원목적** : 도서지역 및 접경지역 어업인의 소득보전
- **근거법** :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대상도서 및 지급액 고시
- **신청대상** : 어업생산성과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및 접경지역 거주 어업인



## 어선에 대한 안전 관리가 강화됩니다.

어선정책팀 (☎ 044-200-5527)

- 기상특보 발효 등 필요한 경우에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였습니다.
  - 다만,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조업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착용하기 쉬운 어선용 구명의도** 입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기존에 「선박안전조업규칙」 등에 의거하여 처벌하던 사항을 법에 반영하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기항지 인근 신고기관에 미신고하거나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조항을 신설**
    - 아울러, 조업한계선 이탈, 서해5도에서의 군부대장 통제 불응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벌칙을 신설하였습니다.
- 또한, 장기간 조업하고 승선인원이 많은 근해어선을 중심으로 수협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는 화재경보 장치를 무상으로 2,700척에 시범 보급하고, 시범 보급·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21년부터는 설치가 의무화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입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적용됩니다.
- ☞ (참고) [법제처 홈페이지](#)> [현행법령 검색](#)> “어선안전조업법” 공포('19.8.27), 시행('20.8.28.)

### < 어선 안전관리 강화 >

- **추진배경** :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확보 및 건전한 어업질서 확립과 국민의 생명·신체 재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주요내용**
  - 기존 「선박안전조업규칙」에 있는 사항 등을 포함하여 어선의 위치 통지 절차, 구명조끼 착용 요건, 안전조업교육 시행기관 및 실시방법 마련
  - 출어등록 절차·방법, 특정해역 외의 해역에서 조업·항행 제한 해역 및 기간 설정 등
- **시행일** : 2020년 8월 28일



## 어선에서 사용가능한 소화기 종류가 확대됩니다.

어선정책팀 (☎ 044-200-5523)

- 그동안 어선에는 해상조건을 고려해 어선용 소화기만을 비치토록 하였으나, 2020년 2월부터는 동일한 성능의 **육상용 소화기도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 현행 : 어선용 소화기
    - 개정 : 어선용 소화기 또는 육상용 소화기
  - 다만, 분말소화기에 한하며 소화능력을 담보하기 위해 간이식은 3.3kg 이상, 휴대식은 6.5kg 이상이어야 합니다.
  - 개정내용은 원양어선을 제외한 전체 어선을 대상으로 2020년 2월 1일(잠정)부터 적용됩니다.
-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정책바다](#)>[법령정보](#)>[행정예고](#)>“총톤수 10톤미만 소형기준 기준” 및 “어선설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20.2.1. 잠정)

### < 어선에서 사용가능한 소화기 종류 확대 >

- **추진배경** : 쉽게 구입·교체 가능한 육상용소화기를 어선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어선 화재사고 예방
- **주요내용** : 어선에 비치하는 소화기 종류 확대
  - 현행 : 어선용 소화기
  - 개정 : 어선용 소화기 또는 육상용 소화기  
(다만, 분말소화기 중 간이식 3.3kg 이상, 휴대식 6.5kg 이상에 한함)
- **시행일** : 2020년 2월 1일(잠정)



## 생분해성어구 보급 보조금 지원기준이 확대됩니다.

어업정책과 (☎ 044-200-5522)

- 해양환경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나일론,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어구를 친환경 생분해성어구로 교체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의 보조금 지원기준이 변경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나일론어구의 60% 가격으로 지원됩니다.
  -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은 `07년부터 국가보조사업으로 시행 되었으며, 생분해성어구가 나일론어구보다 가격이 비싸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20년부터 지원기준을 변경하여 어업인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생분해성어구를 보급합니다.
    - (기존) 생분해성어구가격 - 나일론어구가격 + (나일론어구 가격의 10%)
    - (변경) 생분해성어구가격 - 나일론어구가격 + **(나일론어구 가격의 40%)**
-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정보공개>부서별사전공표정보>2020년도 생분해성어구보급사업 시행지침



## 선박 음주운항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해사안전정책과 (☎ 044-200-5820)

- 술에 취한 상태에서 5톤 이상 선박(낚시어선, 유도선 등은 5톤 미만도 포함)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사람 또는 도선을 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벌칙을 세분화**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2회 이상 음주운항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해양경찰의 **음주 측정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1회 거부시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2회 이상 거부**시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개정내용은 법률이 공포되고 3개월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해사안전법

### < 선박 음주운항 처벌 강화 >

- **추진배경** : 선박을 이용하는 사람의 생명·신체 보호와 재산의 안전 확보를 위해 선박 음주운항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 제기
- **주요내용**
  - 음주 정도에 따른 처벌기준 세분화 및 벌칙 강화
  - 상습 음주 운항자 벌칙 강화
  - 음주측정 거부시 벌칙 강화
- **시행일** : 2020년 4월 1일(잠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시)



## 양식분야에서의 민간투자과 기술개발이 한층 수월해집니다.

어촌양식정책과 (☎ 044-200-5616)

-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성 제고의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 제정('19.8.27)된 「양식산업발전법」이 시행됩니다.
  - 「양식산업발전법」의 시행으로 규제 위주의 현행 법령과 달리 민간투자 규제 완화 및 연관 기술개발 촉진, 전문인력 육성, 국제협력 지원 등 양식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 근거가 강화됩니다.
  - 특히, 초기 대규모 기반투자과 기술 축적이 요구되는 연어, 참다랑어 등의 품목에 한해 대기업의 양식업 진입도 가능해집니다.
  - \* 또한, 양식업 경영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면허기간 만료 전 어장환경, 법령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하여 그 결과를 재면허 여부에 반영하는 양식면허 심사·평가제가 '25년 8월 28일부터 도입됩니다.
  - 이 법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

- **추진배경** : 양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에 규정된 양식업에 관한 내용을 통합하여 독립된 법률체계 마련
- **주요내용**
  - 민간 자본의 양식업 투자 규제 완화
  - 양식업 규모화, 기술개발, 전문인력 육성, 국제협력, 컨설팅 등 지원근거 마련
  - 면허 심사·평가제 도입
- **시행일** : 2020년 8월 28일(면허 심사·평가제에 관한 사항은 2025년 8월 28일)





## 도서민의 여객선 운임 지원이 확대됩니다.

연안해운과 (☎ 044-200-5733)

- 도서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단거리 생활구간 여객운임과 화물차 운임에 대해 50%까지 지원을 확대합니다.
  - 그동안 도서민이 여객선 이용 시, 여객과 차량 운임의 20%를 국가와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해왔으나,
    - \* 단, 고운임 여객선 구간의 경우 도서민은 최대 7천원까지 부담하고 차액은 국가·지자체가 전액 부담하고, 소형과 경형 승용차는 각각 30%, 50% 지원 중
  - 앞으로는 약 1시간 이내의 가까운 거리의 여객선을 이용하는 도서민과 도서민 소유의 비영업용 화물차(5톤 미만)는 이전보다 30% 추가 인하된 요금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법」에 의거 도서에 주민등록이 된 후 30일이 경과된 자와 도서민 지분이 100%인 차량입니다.

☞ (참고) 연안해운 공공성 강화대책(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19.6.27.)

### <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

- 추진배경 : 육지와 떨어져 있는 도서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 주요내용 :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 지침 개정 및 국비 소요예산 반영
  - ① (지침개정) 도서민 단거리 여객 운임과 도서민 소유 화물차의 여객선 운임 지원 확대
  - ② (국비반영) '20년 예산 반영(국비 50%)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 도서민의 여객선 승선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연안해운과 (☎ 044-200-5733)

- 2020년 상반기부터 사진정보를 활용한 **도서민 승선절차 간소화** (승선권 발권 및 탑승 시) **제도가 확대 시행**됩니다.
  - 그간 여객선 **발권 및 승선 시**에 반복해서 **신분증을 제시**하는데서 오는 불편을 호소하는 도서민의 민원이 많았습니다.
    - \* **고령의 도서민**의 경우 **신분증을 미소지**하는 경우도 많고, 지문 마모로 터미널에 비치된 주민등록등본 발급기 사용도 어려운 경우가 다수
  - 이에, 지난해 말까지 옹진군민을 대상으로 시행된 승선절차 간소화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올해부터 **희망하는 지자체별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거주지 소재 **지자체**를 통해 **도서민운임지원 시스템**에 자신의 **사진정보**를 저장하면, 대표담당자가 전산매표시스템상의 **사진정보와 도서민의 실물을 대조\***하는 것으로 신분증 확인절차를 같음하게 되어 도서민의 여객선 이용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 \* 승선 시에는 승선관리스캐너에 표출된 사진정보를 확인하여 신분 확인
-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알림·뉴스>뉴스>보도자료>도서민 여러분, 여객선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세요.\(2019.10.22.\)](#)

### <도서민 여객선 승선절차 간소화>

- **추진배경** : 도서지역 주민의 여객선 이용 불편 해소 통해 정주여건 개선
- **주요내용** : 여객선 승선절차 간소화 및 시범 사업 확대 실시
  - ① (방침 확정) 여객선 승선자 신분증 인정범위 확대 방침 확정 및 승선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신분 확인 시행
  - ② (시범사업 확대) 옹진군과 실시한 시범 사업을 원하는 지자체로 확대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 항만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해사산업기술과 (☎ 044-200-5834)  
해양환경정책과 (☎ 044-200-5289)

□ 2020년 1월 1일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항만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① 선박에 사용되는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이 강화됩니다.

- 현행 : 유종에 따라 0.05%(국내용 경유) ~ 최대 3.5%(중유 C)
- 개정 : 최대 0.5%(국내용 경유는 현행과 같이 0.05%)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국내운항선박은 2021년도 중간검사·정기검사 신청일 또는 2021년 12월 31일 중 빠른 날부터 적용됩니다.

※ 해역·유종별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비교

구 분		경유		중유-A	중유-B	중유-C
황 함유량 (%)	현행	(국내) 0.05	(국제) 1.0	2.0	3.0	3.5
	개정	0.05	(국제) 0.5 ('20.1.~)		(국내) 0.5 ('21.1.~)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알림·뉴스>뉴스>보도자료>2020년부터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강화된다(2019.6.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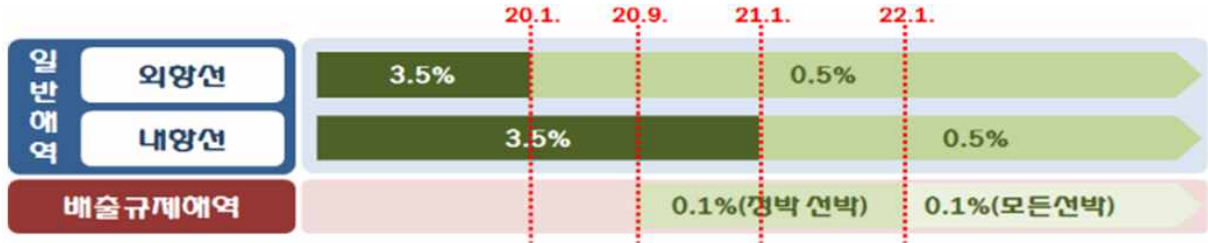
② 5대 대형항만에 배출규제해역을 지정하여 보다 강화(0.1%) 된 선박 연료유 기준을 적용(20.9)합니다.

○ 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 평택·당진 5대 대형 항만에 정박·계류하는 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이 강화됩니다.

- 현행 :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최대 0.5%(국내운항선박은 최대 3.5%)
- 개정 :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최대 0.1%

- 개정내용은 2020년 9월 1일부터 5대 대형항만에 정박·계류하는 선박부터 적용됩니다.

※ (참고) 배출규제해역 지정 시 황 함유량별 적용시기



.(외항선박) '20.1.1.부터 0.5% 적용  
 .(내항선박) '21년도 해당선박의 검사일부터 0.5% 적용  
 .(배출규제해역) 1단계('20.9.1.) 정박·계류시, 2단계('22.1.1.) 해역 진입시 0.1% 적용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정책바다>법령정보>행정예고>“항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2019.8.28.)

③ 하역장비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신설(20.1)하여 관리를 강화합니다.

- 항만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하역장비 배출가스허용기준은 하역장비의 제작시기 및 엔진 출력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일부 하역장비\*에 대한 배출가스허용기준 신설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건설기계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야드트랙터 등 항만전용장비(약 1,200대 규모)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정책바다>법령정보>입법예고>“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19.11.19.)

< 항만미세먼지 저감 대책 시행 >

- 추진배경 : 항만미세먼지 저감
- 주요내용 및 시행일 :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 강화(20.1), 5대 대형항만에 배출규제해역 지정(20.9), 하역장비 배출가스 허용기준 신설(20.1)



## 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제가 도입되고 인증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드립니다.

해운정책과 (☎ 044-200-5720)

- 선화주 기업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해상운송 거래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2020년 2월부터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제도가 도입됩니다.
  - 인증대상은 「해운법」에 따라 외항 정기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자와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화주며, 상생 서비스 수준 및 서비스전략이 우수한 선사와 동반성장 및 공정한 운송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화주는 심사를 통해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증 기업은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해양진흥공사 보증 한도 확대,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정책바다>법령정보>입법예고>“해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19.11.18.\)](#)

### < 우수 선화주 기업 인증 >

- **추진배경** : 해상운송분야 상생협력과 투명하고 공정한 해상운송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지원제도 필요
- **주요내용** : 선화주기업의 상생노력, 공정거래 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고 인증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 **시행일** : 2020년 2월
  - \* 심사를 통해 인증 대상 기업 선정



## 선령 50년 이상 소형유조선의 화물창은 이중 선저 구조가 의무화됩니다.

해사산업기술과 (☎ 044-200-5834)

- 해양환경보호를 위하여 **선령 50년** 이상인 소형유조선은 **화물창을 이중선저(두겹 바닥) 구조를** 갖추고 운항하여야 합니다.
    - 현행 : 단일선저(홀겹 바닥) 구조 허용
    - 개정 : 이중선저(두겹 바닥) 구조 의무화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에 따라 2010년 1월 1일 전에 인도된 재화중량톤수(DWT) 600톤 미만의 소형유조선 중,
    - **선령 50년** 이상(1969년 12월 31일 전에 인도)인 선박 :  
**2020년 1월 1일 전까지,**
    - **선령 40년** 이상(1970년 1월 1일부터 1979년 12월 31일까지 인도)인 선박 :  
**2021년 1월 1일 전까지,**
    - **선령 40년** 미만(1980년 1월 1일 이후에 인도)인 선박 :  
**2022년 1월 1일 전까지,****이중선저구조를** 갖추고 **운항**하여야 합니다.
-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알림·뉴스>뉴스>보도자료>단일선체 소형유조선,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운항금지(2019.2.13.)

### < 선령 50년 이상 소형유조선 화물창의 이중선저구조 의무화 >

- **추진배경** : 단일선체 유조선의 해양사고 발생 시 해양오염피해 예방을 위해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의 유조선에 대하여 이중선저 구조를 갖추도록 의무화
- **주요내용** :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 유조선은 선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중선저구조를 갖추어야 함
- **시행일** : 선령 50년 이상은 '20.1.1., 40년 이상은 '21.1.1., 40년 미만은 '22.1.1.부터 적용



## 마리나업 등록·변경 시 수수료가 전면 폐지됩니다.

해양레저관광과 (☎ 044-200-5275)

- **마리나업 등록·변경 시 발생하던 수수료가 전면 폐지됩니다.**
  - 지금까지 마리나업 등록(2만원), 변경(1만원), 양도·양수·합병(1만원) 시 관련 수수료를 부담하였지만,
    - 앞으로는 관련 수수료가 폐지되어 마리나 창업자들의 **행정적·금전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 ☞ (참고) [국회입법예고 시스템](#)>종료된 입법예고>“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18.12.26, 의안번호 2017625)

### < 마리나업 등록 등 관련 수수료 폐지 >

- **추진배경** : 마리나업 등록·변경 등 발생 시 부담하던 수수료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행정적·금전적 부담 완화 필요
- **주요내용** : 등록(2만원), 변경(1만원), 양도·양수·합병(1만원) 시 발생하던 수수료 폐지
- **시행일** : 2019년 1월 31일(잠정, 개정안 국회심의 중)



## 마리나 대여업 등록의 진입 장벽이 낮아집니다.

해양레저관광과 (☎ 044-200-5275)

- 마리나 대여업 등록 시 **선박 사용권 3년 이상, 사업기간 중 계류시설 사용권 확보 요건이 삭제**됩니다.
  - 사업 등록기간 동안 선박·계류 시설 사용권 확보는 높은 초기 자본력을 가진 사업자에게 유리한 **진입규제**로 작용하였으나,
    - 앞으로는 **등록 시점에 선박·계류시설 사용권이 확보**되었다면 **즉시 등록** 가능하여 창업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31일(잠정)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정책바다>법령정보>입법예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법령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019.11.1.)

### < 마리나대여업 선박·계류시설 사용(등록)기간 삭제 >

- **추진배경** : 마리나대여업 등록 시 3년 이상 선박 사용권과 사업기간 중 계류시설 사용권 확보 요건이 사업 진입장벽으로 작용
- **주요내용** : 3년 이상 선박 사용권 등을 삭제하여 등록 시 관련 사용권이 확보되면 대여업 등록 가능
- **시행일** : 2020년 1월 31일(잠정, 개정안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 진행 중)





## 마리나 대여업 사업자는 입출항 기록을 반드시 관리하여야 합니다.

해양레저관광과 (☎ 044-200-5275)

- 마리나선박 대여업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한 **입출항 기록 관리의무**가 신설됩니다.
  -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는 승선신고서를 작성하고 3개월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 **입출항 시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관할 관청에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7월부터(잠정) 시행될 예정입니다.
- ☞ (참고) 국회입법예고 시스템 > 종료된 입법예고 >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18.12.26, 의안번호 2017625)

### < 마리나선박 대여업 사업자의 입출항 기록관리 의무화 >

- **추진배경** : 마리나선박의 안전 확보와 비상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입출항 기록 관리의무 부여 필요
- **주요내용** : 마리나업 사업자는 입출항시 승선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관청에 제출하고, 3개월 동안 사업장에 보관하여야 함
- **시행일** : 2020년 7월 중(잠정, 시행규칙 개정 등 관련 절차 진행 중)



## 관공선은 친환경 선박 건조가 의무화됩니다.

해사산업기술과 (☎ 044-200-5836, 5838)

□ 2020년 1월 1일부터 정부, 지자체 등에서 공공선박을 건조할 경우, LNG 또는 전기추진선과 같은 친환경선박 건조가 의무화 됩니다.

- (현행) 디젤연료 추진 선박 건조 허용
- (개정) 해양오염저감기술적용선박, 환경친화적에너지\* 사용선박, 전기추진선박, 하이브리드선박, 연료전지추진선박 등 환경친화적 선박 건조 의무화

\* LNG, CNG, LPG, Methanol, Hydrogen 등

○ 해양수산부는 소속 관공선 140척 모두 2030년까지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노후선박 상태평가, 표준설계 마련 및 정부·지자체 대상 기술자문 등 친환경선박 전환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알림·뉴스>뉴스>보도자료>관공선, 친환경 선박으로 본격 전환한다(2019.10.28.)

### < 환경친화적 선박, 환경친화적 에너지 선박 예시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름



해양오염저감·에너지효율향상 기술적용  
(DPF(미세먼지저감 장치))



환경친화적에너지 사용선박  
(LNG, CNG, LPG, 메탄올, 수소 추진선 등)



전기추진.하이브리드 선박



연료전지 추진선박  
(수소연료전지)



## 비관리청 항만공사 제도가 개선됩니다.

항만투자협력과 (☎ 044-200-5965)

- 민간 투자를 통한 항만개발이 활성화되도록 비관리청 항만공사 제도 운영 중 나타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 비관리청 항만공사 **변경허가 절차를 명문화**하여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 **대규모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허가 전에 타당성 검토를 의무화**하여 사업의 객관적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또한,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 중에 발생한 **경미한 사항의 실시계획 변경은 신고로 같음**하고, **변경허가와 실시계획 변경을 동시에 처리**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6월부터 적용(잠정)됩니다.
-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정책바다>법령정보>입법예고>“항만법 전부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2018.6.5.)

### < 비관리청 항만공사 제도개선 관련 항만법 주요 개정 항목 >

- **추진배경** : 행정절차 투명화 및 간소화를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 **주요내용**
  - ① 비관리청 항만공사 변경허가 절차 명문화
  - ② 대규모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타당성 검토 실시 의무화
  - ③ 경미한 사업의 경우 신고로 같음하고, 변경허가와 실시계획 변경을 동시 처리
- **시행일** : 2020년 6월(잠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 e-내비게이션 시범운영을 실시합니다.

첨단해양교통관리팀 (☎ 044-200-6142)

- 해상에 연안으로부터 최대 100km까지 세계 최초로 **초고속 해상무선 통신망(LTE-M)**을 통해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e-내비게이션) 시범운영을 실시하게 됩니다.

\* 기존 선박운항 관리 기술에 첨단 ICT를 적용 육지-선박 간 각종 해양안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활용하는 **차세대 해양안전관리체계**로 실시간 전자해도 등 대국민 서비스 제공

- 올해 우리나라 전국 연안에 약 620개의 초고속해상무선통신망(LTE-M) 기지국과 LTE-M망 운영센터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 앞으로는 최대 100km 해상까지 **기존 선박용 데이터 통신장비보다 약 1,000배**(9.8kbps/문자 → 10Mbps/동영상) 빠르게 육-해상간 **해양안전** 관련 **대용량 데이터 통신**이 가능해집니다.

- **2020년 시범운영**을 통해 통신망을 최적화하고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여 **2021년부터 연안선박 및 어선** 등에 전자해도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나 실시간 맞춤형 해양안전정보를 제공하는 등 **e-내비게이션 서비스**를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 (참고) 한국형 e-Navigation 사업 홈페이지([www.smartnav.org](http://www.smartnav.org))

### <e-Nav 시범운영 주요내용>

- **추진배경** : 대국민 e-Nav 서비스 제공('21~)을 위해서는 사전 시범운영 필요
- **주요내용**
  - e-Nav 서비스(SW) 및 LTE-M 운영센터의 성능 안정화를 위한 실해역 시험·검증, 관계기관 간 서비스 연계 추진 등
- **시행일** : 2020년(연중)

## 「신 · 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모바일 승선권 확대	<input type="checkbox"/> 여객선 이용객이 사전에 모바일을 통해 승선권 예매 후 현장발권 창구를 방문 하여 신분증 제시 후 승선권 수령	<input type="checkbox"/> 여객선 이용객이 모바일을 통해 승선권을 예매하면 알림톡을 통해 승선권 정보를 예매자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하여 별도의 발권창구 방문 없이 모바일 승선권 제시 후 여객선 승선	해운법 ('20.1월)  연안해운과 (044-200-5733)
연안여객선,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 의무화	<input type="checkbox"/> 연안여객선에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 규정 없음	<input type="checkbox"/> 연안여객선에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 의무화 (여객정원 2.5퍼센트 이상)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알림·뉴스>뉴스>보도자료>연안 여객선에 유아용 구명조끼도 꼭 비치해야 합니다(2019.6.4.)	선박구명설비 기준('20.1.1.)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기준 ('20.1.1.)  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38)
뱃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구명뗏목 설치> <input type="checkbox"/> 신설  <비상탈출구> <input type="checkbox"/> 신설  <선장 자격> <input type="checkbox"/> 소형선박조종면허  <사고 제재> <input type="checkbox"/> 신설  <뱃시어선업자 등 전문교육> <input type="checkbox"/> 강의식 4시간/년  <안전 검사> <input type="checkbox"/> 2~3년 주기(어선검사)  <안전 요원> <input type="checkbox"/> 신설	<input type="checkbox"/> 의무화 (13인승 이상, 최대승선인원 100% 이상 수용)  <input type="checkbox"/> 2개 이상 확보 의무화 ('20년 1월 1일 이후 건조된 뱃시어선)  <input type="checkbox"/> 소형선박조종면허 + 승선경력 2년 ('21.2.20까지는 승선경력 1년)  <input type="checkbox"/> 뱃시어선업 미신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시킨 경우 영업정지.폐쇄  <input type="checkbox"/> 신규진입자 안전사고 발생자는 5일 이내 전문교육 이수  <input type="checkbox"/> 매년 안정성 검사  <input type="checkbox"/> 1명 의무화 (야간영업 목적 + 출항시 13인 이상 승선하고 있는 뱃시어선)	뱃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20.1.1)          수산자원정책과 (044-200-5538)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input type="checkbox"/> 신고기관이 없는 항포구 출입항: 영업정지 경고/ 10일/ 15일 <input type="checkbox"/> 기항지 인근 신고기관에 미신고 : 규정 없음 <input type="checkbox"/> 긴급사태에 관한 경보 미청취 : 면허정지 견책/ 30일/ 45일 <input type="checkbox"/>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자 : 규정 없음 <input type="checkbox"/> 안전조업교육 미이수자 : 영업정지 경고/ 10일/ 15일	<input type="checkbox"/> 300만원 이하 과태료	어선정책팀 (044-200-5527)
어선에서 사용 가능한 소화기 종류 확대	<input type="checkbox"/> 어선에서 사용가능한 소화기의 종류 ○ 어선용 소화기	<input type="checkbox"/> 어선에서 사용가능한 소화기의 종류 다변화 ○ 육상용 소화기 사용 가능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정책바다> 법령정보> 행정예고> "총톤수 10톤미만 소형기준 기준" 및 "어선설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20.2.1. 잠정)	어선법 ('20.2.1)  어선정책팀 (044-200-5523)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 지원기준 변경	<input type="checkbox"/> 생분해성어구가격 - 나일론어구가격의 90%	<input type="checkbox"/> 생분해성어구가격 - 나일론어구가격의 60%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정보공개>부서별사 전공표정보>2020년도 생분해성어구보급사업 시행지침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 시행지침 ('20.1.1)  어업정책과 (044-200-5522)
선박 음주운항 처벌 강화	<input type="checkbox"/> 0.03% 이상 -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input type="checkbox"/> 혈중알코올 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해사안전법 ('20.4.1)(예정)  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20)
		<input type="checkbox"/>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input type="checkbox"/> 1회 위반 -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input type="checkbox"/> 1회 위반 -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input type="checkbox"/> 2회 위반 - 1회 위반시와 동일  <input type="checkbox"/> 1회 거부 -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input type="checkbox"/> 2회 거부 - 1회 거부시와 동일	<input type="checkbox"/> 2회 이상 위반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input type="checkbox"/> 1회 거부 -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input type="checkbox"/> 2회 이상 거부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양식산업발전법」 시행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민간 자본의 양식업 투자규제 완화  <input type="checkbox"/> 양식업 규모화, 기술개발 전문인력 육성, 국제협력, 컨설팅 등 지원근거 마련  <input type="checkbox"/> 면허 심사·평가제 도입	양식산업 발전법 ('20.8.28)  어촌양식정책과 (044-200-5616)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input type="checkbox"/> 도서민 여객선 운임의 20% 지원  <input type="checkbox"/> 도서민 소유의 5톤미만 화물차량 운임의 20% 지원	<input type="checkbox"/> 단거리 생활구간(8,340원 미만) 운임 50%까지 지원 확대  <input type="checkbox"/> 도서민 소유 생활차량(5톤미만 화물차량) 운임 50%까지 지원확대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알림·뉴스>뉴스>보도자료>섬마을주민 해상교통비 부담 크게 낮춘다(2019.6.28.)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 ('20. 1월)  연안해운과 (044-200-5733)
도서민 승선절차 간소화	<input type="checkbox"/> 도서민이 여객선을 이용하기 위해 발권 및 승선 시 매번 신분증 제시	<input type="checkbox"/> 도서민 운임지원 시스템에 사진 정보를 등록한 도서민은 시스템상의 사진정보와 실물 대조를 통해 별도의 신분증 제시 없이 승선권 발권 및 여객선 승선 (단, 도서민은 유사시를 대비하여 신분증을 소지하여야함)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알림·뉴스>뉴스>보도자료>도서민 여러분, 여객선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세요('19.10.22.)	해운법 ('20.1월)  연안해운과 (044-200-5733)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강화	<input type="checkbox"/> 황 함유량 0.05 ~ 3.5%	<input type="checkbox"/> 황 함유량 0.5%이하(국내용 경유는 기존과 동일, 0.05%)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알림·뉴스>뉴스>보도자료>2020년부터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강화된다('19.6.25.)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20.1.1)  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34)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5대 대형 항만 선박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및 하역장비 배출가스 허용기준 마련	<input type="checkbox"/>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최대 0.5%(국내운항선박은 최대 3.5%)	<input type="checkbox"/>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최대 0.1%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정책바다>법령정보>행정예고>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19.8.28.)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20.9.1.)  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34)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하역장비의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제작시기 및 엔진출력 기준으로 마련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정책바다>법령정보> 입법예고>"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2019.11.19.)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20.1.1.)  해양환경정책과 (044-200-5289)
우수 선화주의 인증제도 시행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화주의 상생노력, 공정거래 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고 인증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정책바다>법령정보>입법예고 >"해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9.11.18.)	해운법 (‘20. 2월)  해운정책과 (044-200-5720)
선령 50년 이상 소형유조선 화물창의 이중선저구조 의무화	<input type="checkbox"/> 단일선저(홀겹 바닥)구조 허용	<input type="checkbox"/> 이중선저(두겹 바닥)구조 의무화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알림·뉴스>뉴스>보도자료>단일 선체 소형유조선,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운항금지('19.2.13.)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20.1.1.)  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34)
마리나업 등록 등 관련 수수료 폐지	<input type="checkbox"/> 마리나업의 등록, 변경, 양도, 양수, 합병 시 수수료 납부	<input type="checkbox"/> 수수료 납부 폐지 ☞ (참고) 국회입법예고 시스템> 종료된 입법예고>"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2018.12.26, 의안번호 2017625)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1월 중)  해양레저관광과 (044-200-5275)
마리나대여업 선박·계류시설 사용(등록)기간 삭제	<input type="checkbox"/> 마리나업 등록 시 사용권 등 확보 필요 ○ 마리나선박 : 3년 이상 사용권 확보 ○ 계류시설 : 등록기간 동안 사용권 확보	<input type="checkbox"/> 마리나대여업 등록 시점에서 선박·계류시설 사용권이 확보되면 등록 가능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정책바다>법령정보>입법예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법령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019.11.1.)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월 중)  해양레저관광과 (044-200-5275)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마리나대여업 사업자의 입출항 기록관리 의무화	<input type="checkbox"/> 마리나선박 대여업 사업자의 승선신고서 작성의무 없음	<input type="checkbox"/> 사업자의 마리나선박 승선신고서 작성, 제출 및 보관 의무화 ☞ (참고) 국회입법예고 시스템> 종료된 입법예고>“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18.12.26, 의안번호 2017625)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7월 중)  해양레저관광과 (044-200-5275)
관공선, 친환경선박으로 건조 의무화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공공선박을 신규 발주 시 친환경선박(LNG추진선 등) 발주 의무화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알림·뉴스>뉴스>보도자료>관공 선, 친환경선박으로 본격 전환한다(2019.10.28.)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술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20.1.1.)  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36)
변경허가 절차 명문화 등 비관리청 항만공사 제도개선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변경 가능  <input type="checkbox"/> 500억 이상의 대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경제성 등 사업추진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만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허가  <input type="checkbox"/> 일정 규모의 경미한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허가가 아닌 신고로 가능  <input type="checkbox"/> 변경 허가와 실시계획 변경을 동시에 처리가 가능	항만법 (‘20. 6월)    항만투자협력과 (044-200-5965)
e-내비게이션 시범운영 실시	<input type="checkbox"/> 선박은 레이더, 종이해도 등 아날로그 기술 기반으로 운항	<input type="checkbox"/> 첨단 ICT 기술을 적용하여 육상-해상간 해양안전정보를 실시간 전송하는 e-내비게이션의 ‘21년 대국민 서비스 위하여 ‘20년 시범운영 실시	첨단해양교통 관리팀 (044-200-6142)